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05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구단10620 취득세등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9. 11. 14.
판 결 선 고	2019. 1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7.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7. 6. 15. B와 C(이들을 통틀어 '매도인'이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05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7. 25.과 2017. 8. 2. 잔금을 지급하였고 2017. 8.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8. 1.과 2017. 8. 2. 취득가액 3,2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24,942,090원, 지방교육세 12,494,190원, 농어촌특별세 6,499,990원의 합계 143,936,27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자진 신고하고 2017. 8. 2.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7. 3.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D(이하 '제1매수인'이라 한다)과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제1매수인은 2017. 6. 29. [redacted]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카합89호로 매도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제1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7. 7. 4. 가처분 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 등기를 마쳤다.

라. 제1매수인은 2017. 8. 4. [redacted]지방법원[redacted]지원 2017가합12265호로 매도인을 상대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12. 7.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피고의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마. 제1매수인은 2018. 2. 5. 위 승소판결에 기하여 제1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바. 원고는 2018. 5. 23. 피고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05

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 143,936,27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2018. 7. 17. 원고에게 가처분결정에 의한 소유권 말소만으로는 원고의 취득이 무효라고 입증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취득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의 경정을 거부한다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1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5. 2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동산의 취득 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거나 존속한다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정당하게 성립하였으나 이후 가처분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취소되어 소급하여 실효되었고, 그 취소의 원인이 합의 해제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당초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도 소멸된다.

또한 원고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위험이 따르는 유동적 유효의 상태에 있고,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나 취소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도 동일하게 소급하여 소멸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05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두38345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 등 참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에 가처분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처분을 가지고 가처분에 저촉하는 범위 내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19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성립한 납세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위험이 따르는 유동적 유효의 상태에 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나 취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05

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도 동일하게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지위가 불안한 것은 보전소송이 본래 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잠정적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그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는데 기인한 것으로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에게 그 처분행위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것일 뿐 가처분채무자인 매도인과 제3자인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가처분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2017. 8. 1. 및 2017. 8. 2. 신고행위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위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05

별지 1.

부동산 목록

1	[redacted]남도 [redacted]시 E동	F	대	367㎡	토지
2	〃	G	대	332㎡	〃
3	〃	H	대	606㎡	〃
4	〃	I	대	70㎡	〃
5	〃	J	대	111㎡	〃
6	〃	K	대	299㎡	〃
7	〃	L	대	706㎡	〃
8	〃	M	대	209㎡	〃
9	〃	N	대	31㎡	〃
10	〃	O	대	317㎡	〃
11	〃	P	대	82㎡	〃
12	〃	Q	대	29㎡	〃
13	〃	R	대	140㎡	〃
14	〃	S	대	77㎡	〃
15	[redacted]남도[redacted]시 T, F, G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및 판넬지붕 6층 목욕탕, 체력단련장, 주택 지하1층 220.22㎡ 1층 370.32㎡ 2층 370.32㎡ 3층 377.25㎡ 4층 384.18㎡ 5층 363.54㎡ 6층 214.75㎡				건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8-05

별지 2.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끝.